



## (재)김해시복지재단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『김해누리! 행복누리!』 사업 협약서

(재)김해시복지재단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『김해누리!행복누리!』 사업의 효과적인 성금 모금과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- 협약사업명 : 『김해누리!행복누리!』 사업
- 협약당사자
  -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
  -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

### 제1조 (목적)

김해시 관내 저소득층, 소외계층의 문제해소와 지역복지문제 및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인 『김해누리!행복누리!』 사업의 진행을 위해 “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”와 “김해시복지재단”의 성금 모금과 배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협약내용)

- 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(이하 “모금회”라 한다.)와 김해시복지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.)은 『김해누리!행복누리!』 사업의 기부금 관리 및 배분과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② 모금회는 『김해누리!행복누리!』 기부금 관리 배분 및 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재단은 『김해누리!행복누리!』 복지사업 추천 및 배분금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④ 모금회와 재단은 사업의 원활한 모금 및 배분을 위해 해당 사업의 기부자 및 배분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상호간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다.
- ⑤ 모금회와 재단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.

### 제3조 (기부금 모금)

모금회는 모집한 후원자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된 일자에 금융결제원을 통한 일괄 출금과 전용계좌를 통해 모금한다.

### 제4조 (기부금품의 사용 및 사후관리)

- ① 『김해누리!행복누리!』 사업의 모금을 통해 공동 모금된 재원은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단이 추천하는 사업 및 대상자에게 90%를 지원하며, 모금회의 지역 복지 발전에 10%를 지원한다.
- ② 모금회는 모금된 금액을 재단, 재단이 추천한 김해시 관내 사회복지시설·기관, 법정수급자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및 저소득층(중위소득 100%이하)에게 제 1항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,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한다.



- 가. 결연후원금 지원
- 나. 물품 지원
- 다. 사회복지프로그램 사업비 지원
- 라.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사업 지원
- 마.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지원(사회복지시설·기관 연합행사 등)

#### 제5조 (사업진행결과 통보)

모금회는 지급결과를 지원 시점마다 재단에 통보한다.

#### 제6조 (협약기간)

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협약 당사자 간의 기간 종료 협의가 없는 한 2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#### 제7조 (업무세부사항)

본 협약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모금회와 재단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제8조 (협약의 변경)

모금회와 재단은 본 협약의 내용과 세부계획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문서로 상호 통보하되 협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.

#### 제9조 (관계법령 준수)

모금회와 재단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약기관의 규정에 따른다.

#### 제10조 (기타).

- ① 모금회와 재단은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수행과제 등에 대하여 외부로 공표할 수 있다.
- ② 본 사업의 기부금은 협약일로부터 적용한다.

2021년 1월 12일

김해시 신어산길 46(삼방동)

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

대표이사 허 **만원**



창원시 의창구 충혼로 91(두대동)

창원문성대학 내 7호관

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

회장 강기철

